

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목재생산업 등록번호	목재생산업 종류
	상호	대표자 성명
	본사 주소	전화번호/Fax
	공장 주소	전화번호/Fax
신청내용	목재제품의 종류	
	연간 생산·수입 가능량	
	연간 검사 가능량	
	연간 판매량	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임업진흥원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처리절차

